



제439회국회(정기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 거부·제한 금지 및
이행확보 수단 마련〉

■ 문진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691호)

2026. 9.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신 문 근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 거부·제한 금지 및 이행확보 수단 마련	2
2. 개정안 부칙	14
※ 참고자료	1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문진석
2. 제 안 일 : 2026. 4. 29.
3. 회 부 일 : 2026. 4.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이 신체·정신상의 장애, 병역의 복무, 자녀의 양육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를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거나 제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임용권자가 소속 교원의 휴직·휴가 사용의 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관할청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신청 거부·제한 금지 및 이행확보 수단 마련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법정 휴직·휴가 신청에 대한 임용권자의 부당한 거부·제한을 금지하고, 위반 시 관할청의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재정지원 제재 및 과태료 부과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74조제5항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5조(복무) ① · ② (생략)	제55조(복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u><신설></u>	<u>③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이 제59조 또는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규정에 따른 휴직·휴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신설></u>	<u>④ 관할청은 임용권자가 제3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u>
<u><신설></u>	<u>⑤ 관할청은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u>

③ (생 략) 제74조(과태료) ① ~ ④ (생 략) <u><신 설></u>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청이 부과·징수한다.	<u>유 없이 지정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를 할 수 있다.</u>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제7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가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⑥ -----제5항까지의----- ----- ----- -----.
--	--

나. 검토의견

- ☐ 현행 법 제55조제1항¹⁾은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고, 휴직에 관하여는 법 제59조²⁾가 그 사유와 절차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제도

1)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사립학교법」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

상으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준하는 휴직·휴가가 보장되고 있음.

다만, 교육부는 사립학교 교원의 휴직·휴가 관련 민원 통계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나, 초·중등학교의 경우 육아휴직에 따른 휴직·복직일을 학기 단위로 운영하도록 권고하는 사례, 시·도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청원휴직의 승인 여부가 달라지는 사례, 대학의 경우 청원휴직이 불허되는 사례 등 실제 제도운영 과정에서 휴직·휴가 사용이 일부 제약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음³⁾.

현행법령상 휴직·휴가 사용 제한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나 이행 확보 수단이 부재하므로, 개정안을 통해 부당한 거부·제한을 금지하고 시정명령·재정제재·과태료 등을 도입하는 것은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으나, 새로운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만큼 제한 사례의 규모와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실태 파악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 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3) 교육부 제출자료(위원회 요구자료에 대한 회신, 2026. 5.)

< 사립학교법 상 사립학교 교원 휴직 사유 >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 다만, 개정안에 관한 심의 과정에서 다음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사학 운영의 자율성과 교원의 권익 보호 간 적절한 조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사립학교의 교원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과 관련되는 영역이라는 점에서, 임용권자의 휴직·휴가 결정에 대한 국가의 규제가 사학 운영의 자율성⁴⁾을 지나치게 제한하는지 여부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학의 자유가 헌법상 보호되는 기본권이지만, 사립학교가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교육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학 운영의 투명성·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법적 규제는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⁵⁾

4) 「대한민국헌법」

제31조 ④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⑥ 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5) <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07헌마1189,1190(병합) 결정>

사학의 자유는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사립학교를 설립·경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와 제31조제1항 및 제4항에서 도출되는 헌법상의 기본권이지만,

학교법인은 교육의 실시를 목적으로 설립되고 고도의 공공성을 지닌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한다는 점에서 사법인이라는 그 법적 형식에도 불구하고 공익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학교법인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은 사립학교 및 그에 의해 수행되는 교육의 공공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적 자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제도를 형성하거나 학교법인의 자율적인 조직구성권 및 학교운영권에 공법적 규제를 가하는 것까지도 교육이나 사학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는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허용된다 할 것임.

개정안은 새로운 휴직·휴가 사유를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현행 법령에 따라 인정되는 휴직·휴가의 사용을 부당하게 거부·제한하는 행위를 규율하려는 것이라는 점에서, 개정안 제55조제3항의 금지규정 및 제4항의 시정명령 규정 자체가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음.

다만, 휴직의 종류에 따라 임용권자의 재량 인정 여부가 다르고 학교급별·휴직사유별로 교육과정 운영 및 대체인력 확보 여건도 상이할 수 있으므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휴직·휴가의 법적 성격에 맞추어 임용권자의 재량과 제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둘째, 개정안과 현행법 제59조제1항의 정합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 제59조제1항은 본문에서 임용권자가 휴직을 “명할 수 있다”고 하여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제7호 및 제7호의2(육아·입양)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도록 하는 3단 구조를 두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 제55조제3항은 휴직 사유를 구분하지 아니한 채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제한’을 금지하고 있어, 재량휴직 사유(제5호·제6호·제8호부터 제10호까지·제12호·제13호)에 대해서도 사실상 허

용의무를 부과하는 결과가 되어 제59조제1항 본문의 재량구조와 충돌할 소지가 있음. 이 경우 어떠한 거부가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과태료 부과 전제가 되는 의무의 내용이 불명확해지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개정안에 따른 금지 규정의 적용 대상을 법정 의무휴직 사유로 제한하거나, 재량휴직에 대한 거부 제한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임용권자의 재량권 침해 및 침익적 제재(과태료) 부과요건의 불명확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조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금지의무의 주체와 제재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개정안은 금지의무의 주체 및 시정명령·과태료 부과 대상은 ‘임용권자’로, 재정지원 제재 대상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법 제53조의2제2항⁶⁾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복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될 수 있는바, 위임이 이루어진 경우 위반행위자(학교의 장)와 재정지원 제재를 받는 자(학교법인)가 일치하지 않게 되어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② 대학교육기관의 교원 임용권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아울러 재정지원의 주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법 제43조제1항)7)인 반면 개정안의 제재 주체는 관할청(법 제4조)8)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권한 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넷째,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제55조제3항은 ‘정당한 사유 없는 휴직·휴가의 거부·제한’을 금지하고 있으나, 그 판단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임용권자와 교원, 관할청 간에 해석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9).

참고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10)은 사업주에게 육아휴직 허용의무를 부여하면서 그 예외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11)은

7) 「사립학교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8) 「사립학교법」

제4조(관할청)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고등공민학교·특수학교·유치원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1. 사립의 대학·산업대학·사이버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 및 이들에 준하는 각종학교(이하 “대학교육기관”이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아울러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9) 교육부 및 광주교육청 의견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는 예외사유를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에 대해서도 예외사유의 기본적 요건을 법률에 규정하고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방식으로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 다섯째, 재정지원 제재의 범위와 과태료 금액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재정지원 제재 관련 개정안 제55조제5항은 ‘차등적인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원 배제 조치’의 내용 전부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나, ‘차등적인 재정지원’의 의미와 감액 범위가 법률상 예측 가능하지 않음.

특히 시·도교육청의 사립학교 재정지원 13조 665억원 중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가 6조 3,624억원으로 48.7%¹²⁾를 차지하고 있어, 배제 대상과 상한을 법률에서 정하지 아닐 경우 그 효과가 위반 주체를 넘어 소속 교원의 보수와 학생의 학습권에 미칠 수 있음. 제재에서 제외되는 지원 항목과 감액 한도 등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할 필요가 있음.

과태료 부과수준과 관련하여, 현행법 제74조제1항¹³⁾은 관할청의 해

12) 참고2.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 참조.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개자료(교육부 제출자료, 2026. 5.). 기준연도는 확인 필요.

13) 「사립학교법」

제74조(과태료) ① 사립학교 교원 또는 제70조의2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임·징계 요구 불이행이나 제72조의5제4항제2호14)(행동강령 위반자에 대한 징계 미이행 시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등 관할청의 명령 또는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개정안 제55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 불이행 역시 유사한 성격의 위반행위라는 점에서, 이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정하는 것이 법률 내 제재수준의 체계적 균형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필요할 경우 해당 위반행위를 제74조제1항 각 호에 추가하여 기존의 유사한 위반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마지막으로, 다음 사항의 법체계상 정비 사항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① 제55조의 조 제목은 ‘복무’인데 신설되는 제4항·제5항은 관할청의 시정명령 및 재정지원 제재에 관한 사항으로 조 제목과 내용이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또는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제54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6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4. 제66조의2제5항 전단(제70조의6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70조의5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징계의결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70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재심의를 요구하지 아니한 경우
 7. 제70조의7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관할청의 해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8. 제72조의5제4항제2호에 따른 관할청의 시정명령을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경우
- 14) 「사립학교법」
-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④ 관할청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2.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에 소속된 사학기관 종사자가 사학기관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3항에 따른 징계 등의 제재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조를 신설하거나 휴직에 관한 제59조
다음에 규정하는 방안

② 개정안 제74조제5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로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제74조제1항 각 호는 ‘특별한 사유 없이’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로 용어를 통일하는 방안

③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의 부당한 휴직·휴가 제한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는 점

□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등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함.

<교육부> : 신중검토

-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의 판단기준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등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재정지원 축소 또는 배제의 효과가 위반자(임용권자/법인)를 넘어 他교원 및 학생
에까지 미칠 우려

<시·도교육청>

○ (광주교육청-신중검토)

- 사립학교의 인사·운영 자율권의 과도한 제한
- ‘정당한 사유’ 기준이 모호하여 임용권자-교원 간 분쟁 증가
- 사립학교에만 제재규정 마련시 공립-사립 형평성 논란

<경북대, 서울여자대, 진주보건대> : 신중검토

- 대학의 자율적 인사 운영 권한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 존재
- 학습권 및 교육의 질 저하 가능성

<대구보건대> : 일부수정

- 교육의 질 저하 우려 및 재정 여건 악화로 휴직 보장에 따른 부담을 대학이 전적
으로 감당 어려움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년 간의 육아휴직은 의무적으로 보장하되, 그 외는 탄력성 부여 필요○ 대체인력 인건비 지원 등 국가적 재정지원 방안 검토 필요 |
| <p><서울대> : 일부수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량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변경 필요 |

2. 개정안 부칙

가. 개정안의 요지

- ☐ 개정안 부칙에서는 개정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 부칙에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개정안 부칙은 하위법령 마련 등 시행 준비를 위한 유예기간 외에 적용례 규정은 두고 있지 않으나, 개정안 시행 전에 이루어진 휴가 신청 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관할청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다툼이나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따라서 “안 제5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휴직·휴가의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와 같은 적용례를 두어 개정법 적용의 대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한편, 과태료 규정 신설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

조15)에 따라 행위 시 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경과조치를 둘 필요는 없음.

15)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문 의 처

02) 6788-5192

사립학교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73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5조(복무) ①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에도 불구하고 의학·한의학 또는 치의학에 관한 학과를 두는 대학의 소속 교원은 학생의 임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의 장의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겸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겸직 허가의 기준과 절차, 겸직 교원의 직무와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시행 2025. 12. 23.] [대통령령 제35922호, 2025. 12. 23., 일부개정]

제17조(국가의 지원대상) ①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 또는 지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행한다.

1. 실업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2. 국가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3.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학교경영에 재정적 곤란을 받는 학교법인
4.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5. 기타 특히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② 제1항의 보조 또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참고2

사립학교 재정지원 현황(2025년 기준)

(단위: 억원)

시도	성질별 사립학교 지원금 규모				
	인건비 재정결함보조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사립학교 시설지원	목적사업비 등	합계
서울	13,673	2,509	2,582	6,760	25,523
부산	4,649	814	1,240	2,636	9,338
대구	4,247	553	935	2,561	8,296
인천	1,937	569	423	2,244	5,174
광주	3,045	510	572	1,645	5,771
대전	1,903	408	492	1,564	4,367
울산	688	110	139	791	1,728
세종	51	9	16	10	86
경기	10,745	1,668	3,497	7,203	23,112
강원	1,271	215	384	963	2,833
충북	1,673	326	506	735	3,241
충남	2,148	882	690	1,334	5,054
전북	3,794	719	1,472	2,015	8,000
전남	2,711	446	1,163	1,114	5,434
경북	5,474	1,022	1,728	2,562	10,785
경남	4,827	991	1,629	2,917	10,363
제주	789	193	125	452	1,559
합계	63,624	11,941	17,594	37,506	130,665

※ 지방교육재정알리미 공개 자료